

제 2 장

일반적 정의

제2.1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협정이라 함은 양 당사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APEC이라 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말한다.

국민이라 함은 부속서 2.1에서 당사국별로 정의된 국민을 말한다.

위원회라 함은 제18.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위원회를 말한다.

관세평가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1994년도관세및무역에 관한일반협정 제7조의이행에관한협정 및 그 주해를 말한다.

날이라 함은 달력상의 날을 말한다.

기업이라 함은 영리목적 여부 및 민간소유 또는 정부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 또는 조직된 실체를 말하며, 주식회사 · 조합 · 합명회사 · 개인기업 · 합작투자기업 및 그 밖의 연합체를 포함한다.

일방 당사국의 기업이라 함은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 또는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기준이라 함은 이 협정의 발효일자에 유효한을 말한다.

GATS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GATT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라 함은 수익·지출·비용·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재무제표의 준비와 관련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말한다. 이러한 기준은 세부 기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광범위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당사국의 상품이라 함은 GATT에서 이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상품을 말하며, 당사국이 원산지인 상품을 포함한다. 당사국의 상품은 다른 국가의 재료를 함유할 수 있다.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HS)라 함은 양 당사국의 관세법에서 채택 및 이행되고 있는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및 그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 류의 주를 말한다.

호라 함은 4단위 수준의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 관세분류번호를 말한다.

조치라 함은 특히, 법, 규칙, 절차, 행정행위, 요건 또는 관행을 말한다.

공민이라 함은 국민 또는 당사국의 영주권자인 자연인을 말한다.

원산지 상품이라 함은 제4장에 규정된 원산지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을 말한다.

인이라 함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당사국의 인이라 함은 당사국의 공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사무국이라 함은 제18.2조에 따라 설립된 사무국을 말한다.

표준관련조치라 함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말한다.

국영기업이라 함은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소유권익을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호라 함은 6단위 수준의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 관세분류번호를 말한다.

관세철폐계획이라 함은 제3.4조에 규정된 관세철폐계획을 말한다.

영역이라 함은 각 당사국에 대해 부속서 2.1에 규정된 그 당사국의 영역을 말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일부인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일부인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통일 규칙이라 함은 제5.12조에 따라 수립된 규칙을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협정이라 함은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카쉬 협정을 말한다.

부속서 2.1

국가별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가. 칠레에 대하여, 칠레공화국 정치헌법 제13조에 정의된 칠레인, 그리고
- 나. 한국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2조 및 관련법에 정의된 한국인.

영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가. 칠레에 대하여, 자국의 주권에 따른 육지, 해양 및 상공, 국제법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이 행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그리고
- 나. 한국에 대하여, 자국의 주권에 따른 육지, 해양 및 상공, 국제법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제 2 부 상품 무역

제 3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1절 - 정의 및 적용 범위

제3.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광고 필름이라 함은 음향의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기록된 시각매체로서 본질적으로 당사국의 영역내에 설립된 인이나 거주자에 의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 또는 작동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구성되고, 장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용으로는 적합하나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으로는 부적합하며 각 포장단위당 필름 한편만을 포함하면서 더 큰 택송 품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포장품 형태로 수입되는 것을 말한다.

농산물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농업협정 제2조에 언급된 상품을 말한다.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적 견본품이라 함은, 선적시 개별적으로 또는 총계로 미화 1불을 초과하지 않는 가치를 갖거나 또는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가치를 갖는 상업적 견본품 또는 상업적 견본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게 된 표시·파열 또는 천공되었거나 또는 달리 처리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

소비됨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가. 실제로 소비되거나, 또는
- 나. 상품의 가치·형태 또는 용도, 또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실질적 변경을 야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가공되거나 제조된 것.

관세라 함은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부가세 또는 추가 부과금의 형태를 포함한,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된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와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말하나, 다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1994년GATT 제3조제2항,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으로 승계하는 협정의 상응하는 조항과 합치하게 부과된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